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485 발의연월일: 2024. 12. 13.

발 의 자:이정문・이학영・이인영

박 정・황명선・한민수

강훈식 · 김남근 · 임광현

이연희 · 채현일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국회의 계엄해제요구 의결을 저지하기 위해 국회 출입문을 봉쇄하거나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등을 체포하려고 시도하는 등 반헌법적·불법적 내란 행위를 자행한바, 계엄 선포와 해제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민주적 의사결정 절차를 충분히 보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통령은 계엄 선포로부터 72시간 내에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계엄해제 요구를 위한 국회의 기능과 국회의원의 활동을 방해할 경우 국회의장등은 대통령등에 이를 중단하도록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요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계엄은 당연 해제

되고, 계엄 상황에서 국회가 계엄 관련 논의를 위해 회의를 소집할 경우 체포·구금된 국회의원도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계엄해제를 요구할 권한이 있는 유일한 기관인 국회의 기능을 수호하여국민을 계엄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함(안 제4조제2항, 제13조, 제13조의2등).

법률 제 호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부터 제2항까지"로 한다.

② 대통령은 계엄이 선포된 때로부터 72시간 내에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3조를 제13조의2로 하고,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13조의2(종전의 제1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현행범인"을 "현행범(계엄 포고령 위반의 현행범은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국회의 권한 및 기능 보장) ①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국방부장관 및 계엄사령관(이하 "대통령등"이라 한다)은 계엄이 선포된 경우에도 헌법 제77조제5항에 따른 계엄해제 요구를 위한 국회의 기능을 수호하고 국회의원의 활동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국회의장 또는 「국회법」 제12조에 따라 국회의장의 직무를 대리 또는 대행하는 국회부의장(이하 "국회의장등"이라 한다)은 대통

령등이 제1항을 위반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등에게 지체 없이 이를 중단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 ③ 대통령등이 제2항에 따른 요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 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엄은 당연 해제되고, 국회의장등은 즉시 이를 공고할 수 있다.
- ② 계엄사령관 및 행정기관은 국회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한 경우에 도 제11조제1항 등에 따라 국회가 계엄과 관련된 논의 등을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국회의원이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즉시조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계엄 선포의 통고) ① (생	제4조(계엄 선포의 통고) ① (현
략)	행과 같음)
<u><신 설></u>	② 대통령은 계엄이 선포된 때
	로부터 72시간 내에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u>한다.</u>
<u>②</u> <u>제1항</u> 의 경우에 국회가 폐	<u>③</u> 제1항부터 제2항까지
회 중일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집회(集會)를 요구	
하여야 한다.	
<u><신 설></u>	제13조(국회의 권한 및 기능 보
	장) ①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
	고 대통령, 국방부장관 및 계엄
	사령관(이하 "대통령등"이라 한
	다)은 계엄이 선포된 경우에도
	헌법 제77조제5항에 따른 계엄
	해제 요구를 위한 국회의 기능
	을 수호하고 국회의원의 활동
	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국회의장 또는 「국회법」
	제12조에 따라 국회의장의 직
	무를 대리 또는 대행하는 국회
	부의장(이하 "국회의장등"이라

 제13조(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은 현행

 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신 설>

한다)은 대통령등이 제1항을 위반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등에게 지체 없이 이를 중단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③ 대통령등이 제2항에 따른 요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엄은 당연 해제되고, 국회의장등은 즉시 이를 공고할 수있다.

제13조의2(국회의원의 불체포특 권) ① -----현행 범(계엄 포고령 위반의 현행범 은 제외한다)-----

② 계엄사령관 및 행정기관은 국회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한 경우에도 제11조제1항 등에 따 라 국회가 계엄과 관련된 논의 등을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국회의원이 회의에 참석 할 수 있도록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